

# 중국투자실무상의 법적 문제

김 종 길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 목 차

|                                   |           |
|-----------------------------------|-----------|
| <b>I . 중국법률제도의 특색</b> .....       | <b>75</b> |
| 1. 중국특색의 법률제도                     |           |
| 2. 중국법률의 이중구조                     |           |
| 3. 변화와 괴리                         |           |
| 4. 상하위법 관계                        |           |
| 5. 변동규정                           |           |
| <b>II . 중국 투자관련법률상의 문제점</b> ..... | <b>82</b> |
| 1. 지방정부와의 투자합의서                   |           |
| 2. 정부인허가 관련                       |           |
| 3. 이면합의(side agreement)           |           |
| 4. 분쟁해결                           |           |
| <b>III . 중국의 최신법률 동향</b> .....    | <b>88</b> |
| 1. 공사법                            |           |
| 2. 세제통합                           |           |
| 3. 반독점법                           |           |
| 4. 노동법                            |           |
| 5. 물권법                            |           |



# I. 중국법률제도의 특색

## 1. 중국특색의 법률제도

중국의 법률제도는 한마디로 중국특색의 법률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다른 나라의 법률제도의 경우에는 대체로 영미법계, 대륙법계, 이슬람법계, 사회주의법계등으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으나, 중국의 법률제도는 이와 같이 단순하게 어느 한 법계로 분류하기 어려운 요소가 있다.

근대적인 법률제도를 새로이 확립한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 영미법계 혹은 대륙법계의 법률제도를 어느 특정 나라를 모범으로 하여 수계(受繼)하는 방식으로 법률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일본이 독일, 프랑스의 대륙법계를 수계한 것이나, 한국이 일본을 통하여 대륙법계를 수계한 것이나, 홍콩, 싱가포르 등이 식민본국이었던 영국의 영미법계를 수계한 것 등이 그러한 예일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대륙법계, 영미법계, 사회주의법계, 그리고 중화법계의 법률제도가 혼재되어 있어, 어느 한 법계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해버리기 쉽지 않다. 중국은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취하고 있어 법률에 있어서도 헌법, 행정법등 공법분야는 사회주의법계의 전통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사법분야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에 관계없이 각국의 법률제도를 선택적이고 부분적으로 받아들여 사용하고 있다. 이외에 중국에서 수천년간 유지되어온 중화법계의 전통도 법률관념이나 법률집행 등의 분야에서 아직 온존하고 있다.<sup>1)</sup>

중국의 법률제도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그 이유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중국특색의 법률제도가 다른 어느 특정 '법계'를 수계하는 방식으로 건립되는 것이 아니라, 각 법률분야별로 전세계의 여러 법계의 제도들을 선택적이고 부분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점 이외에 다음과 같은 점도 작용하고 있다. 첫째, 시기적으로, 중국은 최근 20여년간 경제제도에 있어서 계획경제체

1) 중화법계는 (1) 사법보다 공법을 중시하고, (2) 절차법보다는 실체법을 중시하며, (3) 권리보다 의무를 중시하고, (4) 결과(객관)보다 동기(주관)를 중시하고, (5) 입법과 행정이 분리되지 않는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제에서 시작하여 계획있는 상품경제체제를 거쳐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로 변화하였고, 최근에 WTO에 가입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경제체제가 변화함에 따라 법률제도도 근본에서부터 변화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변화는 급격하면서도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왔다. 둘째,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5개 경제특구와 연해 개방지역과 같이 경제가 발달한 지역과 중서부지역과 같이 경제가 낙후된 지역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 각 지방마다 법률의 성숙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은 어느 한 법률체계를 수계하지 아니하고, 나름대로의 법률체계를 구축해가고 있으며, 현재도 그 작업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의 법률체계는 동적이고 현재진행형이며 모습을 가다듬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중국의 법률제도를 심도있으면서 전면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

## 2. 중국법률의 이중구조

중국의 법률제도를 살펴보면, 상호 모순되거나 대립되는 제도가 공존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사회주의시장경제, 일국양제, 이중영도제등이 그것이다.

우선, 사회주의시장경제의 법률체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치에 있어서는 사회주의, 경제에 있어서는 시장경제체제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법분야에서의 법률원칙은 종전의 사회주의법계의 법률원칙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즉, 민주집중제<sup>2)</sup>와 공산당영도<sup>3)</sup>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경제분야에서는 종전의 사회주의경제체제의 3대원칙이라고 일컬어지는 계획경제, 생산수단의 공유, 노동에 따른 분배의 원칙이 있는데, 이 중 중국에서 계획경제는 이미 시장경제를 표방함으로써 명시적으로 포기되었고, 노동에 따른 분배는 외자기업, 사영기업 등을 허용하면서 자본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2) 민주집중제는 삼권분립제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입법, 사법, 행정을 서로 다른 국가기관이 행사하며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삼권분립시스템이 아니라, 입법, 사법, 행정을 하나의 국가기관(전국인민대표대회)이 장악하는 시스템이다.

3) 공산당영도는 다당제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프롤레타리아독재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데, 최근들어 중국은 3개대표론을 내세워 공산당이 '노동자 농민 및 광대인민의 이익'을 대표하겠다고 함으로써, 공산당이 자본가계급(기업가)의 이익까지 대표하겠다고 선언하여, 순수한 의미의 프롤레타리아독재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포기되었다. 생산수단의 공유원칙은 공유제위주의 원칙으로 변형되어 남아있고, 지금도 자본주의시장경제와 사회주의시장경제의 구분은 사유제위주의 시장경제이나, 공유제위주의 시장경제이나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유기업의 주식제개조가 진척됨에 따라 기존의 국유기업들이 주식회사로 조직변경되면서 더 이상 중국의 경제를 공유제위주의 경제라고 부를 수 있을지에 대하여도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다음으로, 중국은 홍콩, 마카오, 대만의 통일과 관련하여 일국양제(一國兩制, one country two system)라는 새로운 제도를 실험하고 있다. 이는 1997년의 홍콩주권회복, 1999년 마카오주권회복에 발맞추어 향후 홍콩과 마카오등지에서는 기존의 제도대로 자본주의제도를 시행하고, 대륙에서도 기존의 제도대로 사회주의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sup>4)</sup> 하나의 주권국가안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공존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정부조직체계에서 이중영도제를 택하고 있다. 이중영도제는 하나의 국가기관이 동급 지방정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동시에 중앙정부의 해당부서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지방의 법원, 검찰원의 경우에 법원장, 검찰원장의 임명은 동급지방의 인민대표대회로부터 받으며, 예산은 동급 지방정부로부터 받고,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최고인민법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다.

중국 법률시스템에서의 이와 같은 이중구조는 지역적(대륙과 홍콩,마카오,대만), 분야별(공법분야와 사법분야), 단계별(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걸친 것으로써 연방제 국가의 시스템과는 차이가 있다. 동구권에서는 실패한 시장사회주의가 중국에서는 사회주의시장경제로 이름을 바꾸어 지금까지 무난하게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중구조의 법률체계가 중국에서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동인으로는 중국의 역사에서 그 해답을 찾기도 한다.

즉, 중국은 유사 이래로 유목민족과 농경민족이 공동으로 제국을 이루어 왔고, 유목민족(진, 원, 청)과 농경민족(한, 송, 명)이 서로 번갈아가며 정권을 잡아 중화대륙에서의 제국을 이루어왔다.<sup>5)</sup> 농경민족과 유목민족이 장기간 하나의 제국

4) 홍콩, 마카오에서는 북경정부가 국방, 외교(주권과 관련되는)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야(입법, 사법, 행정등)를 홍콩, 마카오정부에 맡기는 것인데, 대만에 대하여는 외교(주권과 관련되는)를 제외한 국방권까지 대만정부에 맡길 수 있다고 하고 있다.

5) 당나라에 대하여는 유목민족정권으로 볼 것인지, 농경민족정권으로 볼 것인지 논쟁이 있다.

을 이루어 살아온 것은 중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중국은 유가와 법가라는 서로 배치되는 두가지 통치이념을 적절히 조합하여 지금까지 사용하여 왔다. 이와 같이 서로 모순되는 민족과 서로 모순되는 통치이념이 하나의 제국 안에서 살아가고 운용되었던 경험은 현대의 중국에서 일견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회주의와 시장경제, 일국양제, 이중영도제와 같은 제도들을 무리없이 이끌어가는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 3. 변화와 괴리

중국에서는 경제의 변화 발전에 따라, 법률제도를 계속 정비해가면서 따라가고 있지만, 이러한 법률의 제정이 경제발전의 속도를 따르지 못하는 법률지체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즉, 경제체제는 계획경제, 계획있는 상품경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로 변화해가고, WTO가입을 계기로 체제체는 대외개방적인 체제로 바뀌어 갔다. 그러나,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등 정비작업은 경제체제의 변동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야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당한 기간 동안 법률의 규정이 경제체제의 변화를 따르지 못하여 낙후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단계에서 상위법인 법률은 아직 변경되지 않았으나, 하위법인 각종 법규나 지방성 법규는 경제체제의 변화에 발맞추어 재빠르게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경우가 있다. 법률상 상하위법의 위계질서나 효력순위로 보면 상위법률이 변경되기도 전에 하위법규가 제정되거나 개정되었다면 당해 하위법규는 상위법률에 충돌되므로 무효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에 일률적으로 무효로 취급해버린다면 오히려 법률이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상위법에 어긋나는 하위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이 발휘되는 경우가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북경시에서는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을 가일층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을 통하여 (1) 귀국유학생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최저자본금을 10만인민폐로 하고, (2) 첨단기술을 출자하는 경우 기술출자의 최대한도를 전체지분의 35%로 하며, (3) 납입자본금을 직접 납입하지 아니하더라도 벤처캐피탈이나

담보회사로 하여금 납입자본금부분을 2년한도로 담보계약만 체결하면, 실제 납입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납입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었다. 또한, <<중관촌과기원구기업등기관리방법>>에는 외국회사의 분지기구설립에 관한 조항을 두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들은 모두 당시의 <<공사법>> 규정에 위배되는 내용들이었다. 즉, 당시의 (1) 공사법에 의하면 유한책임회사는 업종에 따라 최저자본금이 10만-50만인민폐이고, 개별법규로 하한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최저자본금을 10만인민폐로 일괄 하향조정한 것은 공사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2) 공사법은 유한책임회사의 무형자산출자한도를 20%로 하고 국가가 첨단기술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 예외로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별도로 규정하기 전에 지방정부가 먼저 한도를 35%로 상향하는 규정을 제정한 것도 공사법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3) 공사법상으로 납입자본금은 실제납입되고 납입증명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벤처캐피탈이나 담보회사의 담보만 있으면 납입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한 것도 공사법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4) 외국회사의 분지기구는 국무원이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정부에서 국무원의 수권없이 외국회사의 분지기구에 관한 별도규정을 둔 것도 공사법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런데, 중국의 공사법은 1993년에 제정되어 정보통신산업이나 벤처기업, IT기업이 세계를 품미하기 이전에 제정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아니라, 중국정부도 공사법의 일부 규정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은 하고 있으나, 보다 시급한 다른 법률들의 제정, 개정작업으로 인하여 상대적인 개정의 필요성이 적은 공사법까지 수정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2005년 10월 27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전면적인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지방정부는 공사법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현행 법률에서 정한 권한을 넘어 지방법규를 제정하였는데, 오히려 새롭게 변화된 경제환경에 부응하는 내용의 지방성법규를 단순히 상위법에 어긋나는 하위법규라는 이유만으로 무효화시키기는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중국에서의 법규의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법규간의 효력의 우위나 모순충돌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정책의 변

경, 법률제정환경의 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법규의 집행력에 대하여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 4. 상하위법관계

중국에서는 최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하는 법률과 국무원이 제정하는 행정법규를 합하여 매년 100건 내지 200건씩을 제정하여 왔다. 특히, 2001년부터 2002년까지는 WTO가입의 후속조치로 기존의 법령 중 내국인대우원칙, 무차별 대우원칙등에 어긋나는 내용의 법률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급증하여, 많은 법률과 행정법규가 제정, 개정되거나 폐지되었는데 그 수는 약 2,000건을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단기간에 여러 등급, 여러 종류의 기관에 의하여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많은 법령이 제정되면서 법령간의 정합성이 결여되고 상호 모순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방보호주의와 부서이익보호주의가 충돌하면서 국무원의 부문규장과 지방법규와의 사이에 모순점은 현저한 편이다. 법령간의 효력우선순위와 적용에 관하여는 <<입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입법법>>에서는 법령의 우선순위를 (1) 헌법, (2) 법률, (3) 국무원의 행정법규, (4) 국무원 각부, 위원회(부문)의 규장, 성급 인민정부의 규장 및 성급 인민대표대회의 지방성법규, (5) 성급 아래의 하급 지방성법규의 순서이다. 이 중 가장 문제로 되는 것이 바로 (4)의 국무원부문의 규장, 성급 인민정부의 규장 및 성급 지방성법규 간의 충돌이다.

<<입법법>>에서 지방성법규는 동급 및 하급의 지방정부 규장에 우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양자간에 충돌이 발생하면 지방성법규가 우선한다. 문제는 국무원부문의 규장과 성급 인민정부의 규정간의 충돌과 국무원부문의 규장과 성급 지방성법규간의 충돌이 있는 경우이다. 양자간은 효력이 동등하므로, 두 법규의 내용만을 살펴봐서는 우열을 따질 수 없고, 양자의 직근 상급기관에 법규적용순위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

첫째, 국무원부문의 규장과 성급 인민정부의 규장간의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국무원이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둘째, 국무원부문의 규장과 성급 인민대표



대회의 지방성법규간의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국무원이 우선 검토하여 (1) 성급 지방성법규를 우선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지방성법규를 우선 적용하도록 결정하며, (2) 국무원부문의 규장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그 결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후자의 경우에도 국무원이 전인대 상무위원회로 보내기보다는 당해 지방에 수정의견을 보내어 지방에서 자발적으로 수정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중국정부는 이와 같이 지방성법규와 규장 혹은 규장간에 모순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규규장등록조례>>에서 모든 지방성법규와 규장을 국무원에 등록하도록 하여, 국무원의 법제판공실에서 상호간의 모순충돌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 5. 변통규정

중국에서 지방법규중 특수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가 경제특구이고 다른 하나가 소수민족의 자치구, 자치주 등의 자치조례, 단행조례이다.

입법법에서는 경제특구가 수권을 받아 법률, 행정법규, 지방성법규에 대하여 '변통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제특구에서는 경제특구의 규정을 적용한다(제81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자치조례와 단행조례가 법에 따라 법률, 행정법규, 지방성법규에 대하여 '변통규정'을 둔 경우에는 당해 자치지방에서는 자치조례와 단행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제81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특구나 민족자치구의 지방성법규, 자치조례 또는 단행조례는 상위법인 법률, 행정법규 등의 조항에 어긋나는 경우라 하더라도, 변통규정으로 인정되면 효력이 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 변통규정으로 유효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권한을 넘은 것인지에 대하여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향후 그 효력이 유지될 것인지의 여부가 유동적이라는 문제가 남는다.

## II. 중국의 투자관련법률상의 문제점

### 1. 지방정부와의 투자합의서

중국에 투자하기로 하는 경우에 대부분은 당해 지방정부<sup>6)</sup>와 투자합의서<sup>7)</sup>를 체결하고 있다. 투자합의서에는 외국투자자의 투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중국지방정부의 외상투자에 대한 우대조치, 지원사항등을 기재하여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방정부와 투자합의서를 체결함에 있어서 외국기업들은 중국의 지방정부가 서면으로 약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이행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경우가 많은데, 향후 지방정부가 서면으로 약속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곤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방정부는 투자합의서등에서 우대혜택을 여러가지 제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우대혜택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자는 명확하게 분석을 하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즉, 지방정부가 제시하는 우대혜택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구분하여야 한다. (1) 중국의 법률, 법규당 당연히 부여되는 우대혜택. 여기에 속한 것들은 경제특구, 국가급개발구지역의 제조업체에 대한 15%기업소득세율, 연안개방도시, 성급개발구지역의 제조업체에 대한 24%기업소득세율, 2면3감반(이윤이 난 해로부터 2년간 100% 기업소득세 면제, 3년간 50%면제), 장려업종의 경우 도입설비에 대한 관세면제등, (2) 중국의 법률, 법규상 금지, 제한되어 있거나 지방정부의 권한범위를 벗어남에도 지방정부가 부여하겠다고 약속하는 우대혜택. 기업소득세율의 인하(예를 들어, 비경제특구지역임에도 15%의 기업소득세율을 약속하는 경우), 3면5감반과 같이 법률법규를 초과하는 세금감면혜택, 법규에 정하지 않은 증치세/영업세/관세등의 감면혜택, 지방정부권한범위외의 사항(전기료인하등). (3) 지방정부의 권한범위에 속하는

6) 성정부, 시정부, 현정부등과 체결하는 경우도 있고, 개발구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발구관리위원회(역시 지방정부임)와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7) Memorandum of Understanding(양해각서, 양해비망록), 협의서의 형태로 체결하기도 한다.

사항. 지방정부의 합법적인 재정보조금지급, 토지사용료등의 책정(법상 최저한도이상에서), infra structure건설, 지방정부산하기업의 공급가격등.

지방정부가 약속하는 우대혜택중에는 법률법규상 당연한 것과 지방정부의 권한범위내에 드는 사항 이외에, 지방정부의 권한을 벗어나거나 법률법규에 위반되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적지 않다. 그러므로, 외국투자자로서는 지방정부가 약속하는 사항중에서 (1) 법률상 당연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절차상의 이슈(관세면제를 받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등)만 확인하면 되고, (2) 법률상 금지, 제한되거나 지방정부의 권한을 벗어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러한 혜택을 굳이 거절할 필요는 없고, 다만, 여기에 속하는 우대혜택을 얻어내기 위하여 협상에서 정력을 낭비할 필요는 없으며(사업타당성을 검토할 때에는 이러한 우대혜택은 적용되지 않을 것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3) 지방정부의 권한범위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협상을 통하여 얻어내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정부가 투자협약에서 약속한 사항을 위반하더라도 책임을 추궁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중국은 담보법상 국가기관은 '외국정부 또는 국제경제조직의 차관에 대하여 국무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증인이 될 수 없다(제8조).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중국파트너의 계약이행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하더라도 그러한 보증을 법상 효력이 없게 된다. 또한, 위에 언급한 내용중에서 (1)의 사항은 법상 당연한 사항들이므로, 지방정부에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등 제반 절차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며(다만, 이 경우 지방정부에 대하여 요구하는 근거는 투자협약서가 아니라 해당 법률법규가 될 것이다), (2)의 사항은 중국법규에 어긋나거나, 지방정부의 권한범위밖의 사항이므로 그 자체로서 효력이 없거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며, (3)의 사항에 대하여도 지방정부가 예산부족등의 이유를 들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실상 지방정부를 상대로 위약책임을 청구하기 힘들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정부와의 투자협약서는 신사협정(gentleman's agreement)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지방정부가 약속한 사항들중에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국유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구체적인 계약에서 그러한 내용을 반영시켜두는 것이 필요하다.

## 2. 정부인허가관련

외국인투자자가 진출하고 싶어하나, 중국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부여하지 받을 수 없거나 어려운 업종이 있다. 예를 들면, 인터넷, 통신, 출판, 교육, 방송, 전신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외국인투자자들이 진출하는 방식으로는 (1) 중중외(中中外)방식, (2) 명의신탁방식, (3) 인허가우회취득방식등이 있다.

중중외방식은 외상투자기업이 재투자하여 내자기업을 설립하고 내자기업이 다시 내자기업을 설립한 후, 그 내자기업이 내자기업의 자격으로 정부인허가를 취득하는 방식이다. 중국의 관련법규상 외상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금지, 제한업종에 종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외상투자기업이 재투자한 내자기업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업종제한이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의 관련법규에서 외상투자기업의 재투자한 내자기업이 다시 재투자한 내자기업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이러한 방식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외국인투자자가 당해 업종에 종사하는 방식을 취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외국인투자진입에 대하여 중국정부는 연통(Unicom)의 사례에서 허용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고 외자를 철수하도록 조치를 취한 바 있어, 현재는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명의신탁방식은 중국내 인터넷기업들이 해외상장을 하는 경우등에 많이 사용되고,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금지업종에 진출하는 경우에도 사용되고 있다. 이 방식은 자문업등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는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한 후, 중국인 개인 또는 중국파트너기업(명의주주)의 명의를 빌려 내자기업을 설립하고, 내자기업의 명의로 인허가를 취득하며, 외상투자기업과 명의주주와의 사이에는 출자금대출계약, Call Option계약, 의결권위임계약 등을 체결하여 사실상 내자기업의 지분과 경영권을 외상투자기업이 장악하고, 내자기업과 외상투자기업과의 사이에는 자문계약등의 형태로 거래관계를 만들어 이익을 외상투자기업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현재, 외상투자가 금지되어 있는 업종에 진출하는 경우에 이러한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명의주주와의 관계등 일정한 리스크는 존재한다.

인허가우회취득방식은 예를 들어, 중앙정부 인허가사항이고 중앙정부는 인허가를 부여하지 아니하나, 지방정부는 당해 사업을 추진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즉, 당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지방정부의 인허가만을 취득한 상태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골프장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의 인허가사항이고 중앙정부는 인허가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지방정부가 체육시설업 또는 골프연습장업등의 형태로 인허가를 부여하여 실질적으로 골프장사업을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프로젝트분할방식으로 중앙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여러 개의 지방정부의 인허가만으로 가능한 사업으로 나누어, 지방정부의 인허가만을 취득한 상태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경우 인허가를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향후 사업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안을 수밖에 없다.

### 3. 이면합의(side agreement)

중국의 계약법은 강제성규정에 위반한 계약을 무효로 보고 있고, 정부인허가를 요하는 계약에 대하여 정부인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외국인투자자와 관련하여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면계약은 일관되게 그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면계약, 즉 정부인허가신청시에 제출하지 않으면서 당사자들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향후 중국법률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강제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업무상으로는, 이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필요가 여러가지 경우에 발생한다. 지분율과 관련하여서, 중국법규상 지분율제한이 있는 경우에 실질적인 지분율과 정부신고상의 지분율이 다른 경우에 양자간의 관계는 실질적인 지분율에 따라 처리됨을 정하는 경우, 혹은 상대방이 명목상 지분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명의신탁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경우등이 있을 수 있다. 이외에 경영권과 관련하여 신고된 내용과는 별도의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출자금 납입시기와 관련하여 계약상의 일정과 다른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면계약으로 합의한 내용을 합법화시키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 이사회결의의 결의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합자계약이나 정관등에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추가한 후 이사회에서 양자간의 이면합의에 해당하는 내용을 결의해두는 것이다 이사회결의나 이사회결의로 작성된 내규는 회사에 대하여는 규범력을 가지므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술도입계약, 설비도입계약, 자문계약 기타 합자회사와 당사자간에 체결하는 별도의 합법적인 계약에서 양자간의 이면합의 사항을 반영시켜두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이면계약의 내용이 당해 계약의 신고 등의 절차에 따라 발효하기 때문에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부속이행합의의 형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계약상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부속이행합의를 체결할 수 있음을 규정해두고, 부속합의의 형식으로 이면계약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이 이사회결의, 별도계약, 부속이행합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합자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이후 법원에서 합자계약의 실질적인 변경에 대하여 인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효로 판단할 여지는 여전히 존재한다.

#### 4. 분쟁해결

분쟁해결조항은 투자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조항의 하나인데, 중국투자와 관련하여 분쟁해결조항을 둬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특색이 있다.

첫째, 합자투자계약의 준거법은 반드시 중국법으로 하여야 한다(계약법 제126조 제2항). 다만, 합자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체결하게 되는 부속계약들 예를 들어, 기술도입계약, 설비수입계약, 판매대리계약등은 반드시 중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둘째, 합자투자계약은 중국어본이 원본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중국의 관련법규에 반드시 합자투자계약을 중국어로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인허가실무상 합자투자계약을 제출함에 있어서 적어도 중국어본이 우선하거나 적어도 다른 언어본과 동등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실무적으로는 중국어본과 영

어본(또는 한글본)은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는 내용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외에, 기술도입계약, 설비수입계약, 판매대리계약등은 반드시 중국어본이 원본이 되지 않아도 되므로, 외국어본으로 작성할 수도 있다.

셋째, 중국의 중재기관은 두 개의 계통으로 나뉘어져 있다. 하나는, 종전의 섭외중재기관인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으로 북경에 본부가 있고, 상해, 심천에 분사무소가 있다. 다른 하나는, 종전의 국내중재기관으로 성급, 시급등으로 나뉘어진 중재위원회이다(예를 들어, 북경시중재위원회, 청도시중재위원회 등). 종전에는 CIETAC는 섭외중재만을 담당하고, 국내중재위원회는 국내중재만을 담당하여 수리사건의 범위가 서로 구분되었는데, 중재법 제정이후에는 이러한 수리사건범위의 제한이 없어져, 지금은 어느 중재기관이든 국내, 국제중재를 모두 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지방중재위원회에 비하여 CIETAC이 양질의 중재원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 국제중재경험도 많아 외상 투자기업이 분쟁해결기관으로 선택하기 보다 적절한 편이다.

넷째, 중국은 기구중재만 허용하고, 임시중재(ad hoc arbitration)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제상공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국, 북경에서 중재로 해결한다는 것과 같은 조항은 들 수 없다. 중국내에서 중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CIETAC의 중재에 의하거나, 각급중재위원회의 중재에 의할 수밖에 없다.

다섯째, 중국내의 중재인 경우에도 중재를 영어로 진행하고, 수석중재인을 제3국인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할 수 있고, 이러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된대로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CIETAC은 외국인들도 일부 중재원명부에 올려놓고 있으며, 당사자들이 중재인으로 선택할 수 있다.

여섯째, 국제중재인 경우에는 중국내의 법원에서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하기 어렵다. 현재, 중국 법원의 실무상, 중국국내의 중재기관에 중재진행중인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국내중재기관에 보전처분을 신청하면 중재기관이 다시 법원에 신청하여 보전처분을 내려주고 있으나, 외국중재기관에서 중재를 진행중인 경우에는 법원에서 보전처분을 접수받아주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제3국중재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향후 중국에서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없다는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 Ⅲ. 중국의 최신법률동향

#### 1. 공사법

중국의 공사법은 1993년 12월 29일에 제정되어,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공사법제정이전에 중국의 기업은 소유제에 따라 분류하였는데,全民所有制(국유)기업, 集体所有制기업(집체소유제기업), 사영기업, 外商投资企业(소위 삼자기업으로 합자기업, 합작기업, 외자기업)이 그것이었다. 그런데, 회사법에서 회사를 유한책임공사와 주식유한공사로 분류함으로써 처음으로 책임형식에 따른 회사분류가 시작되었고, 이후 합명기업, 개인독자기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공사법제정이후에 경제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기존의 공사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였고, 개정의 필요성이 여러 측면에서 계속 제기되어 왔었는데, 2005년 10월 27일에야 비로소 공사법을 대폭 개정하였고,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번, 공사법 개정에서는 여러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1인유한책임회사를 허용하였다는 점이다. 종전에는 100%국유기업의 경우에만 1인유한책임회사를 허용하였는데, 이제는 누구나 1인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재투자제한을 완화하였다는 점이다. 종전에 회사는 순자산의 50%범위내에서 다른 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는데, 개정법에서는 이러한 제한을 풀어주었다. 셋째, 최저자본금의 금액을 하향조정하였다는 점이다. 종전에 유한책임회사의 최저자본금은 제조, 도매업은 50만위안, 소매업은 30만위안, 연구개발, 서비스업은 10만위안이었는데, 개정법에서는 업종에 관계없이 3만위안으로 하향조정하여,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였다. 주식유한회사도 최저자본금을 1000만위안에서 500만위안으로 낮추었다. 넷째, 등록자본금을 분할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중국에서는 등록자본금에 관하여 한국과 같은 수권자본제를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분할납입제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논쟁이 있었으나, 결국 분할납입제로 정리되었다. 다섯째, 회사의 법정대표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동사장을 법정대표인으로 규정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동사장, 총경리, 집행동사중에서 정관에서 법정대표인을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여섯째, 출자목적물에 대하여 종전에는 무형자산출자는 원칙적으로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는데, 개정법에서는 무형자산출자의 상한을 정하지 않고, 다만, 현금출자금액이 30%이상일 것만을 요구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일곱째, 실질 지배주주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을 두었다. 여덟째, 법인격부인론을 입법화하였다.

## 2. 세제통합

현행 중국의 세제는 내자기업과 외상투자기업으로 나누어져 있다. 내자기업의 경우에는 33%의 기업소득세를 납부하는데 반하여, 외상투자기업은 (1) 경제특구, 국가급개발구에 설립된 제조업체는 15%, (2) 연안개방도시, 성급개발구에 설립된 제조업체는 24%, (3) 기타 업체는 30%(지방세 3%별도)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계제도에 있어서도, 중국국유기업은 인건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규정되어 있는 등 내자기업이 외자기업에 비하여 불리한 적용을 받고 있다.

이러한 내외자기업의 세제차이는 내자기업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주요한 사항이었고, 이로 인하여 내자기업들중에는 가짜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가짜외상투자기업은 중국국내기업이 신규사업을 진행할 때 일부자금을 해외(홍콩 또는 BVI등 Tax Heaven지역)로 빼낸 후, 해외기업의 명의로 25%의 지분을 출자하고, 나머지 75%의 지분은 내자기업에서 출자함으로써 외상투자기업의 혜택을 받는 것을 말한다<sup>8)</sup>. 현재,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의 국적은 홍콩이 약40%로 1위, BVI가 약20%로 2위인데, 이 중 상당수는 중국국내기업의 자금이 역투자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올해들어 외국인투자자의 인허가신청시 외국인투자자의 신분증명에 대하여 현지의 공증뿐만 아니라 현지 중국영사관의 영사확인까지 받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제정하였다.<sup>9)</sup>

8) 중국은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율이 25%이상인 경우에는 외상투자기업으로써 외상투자기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자의 비율의 다과에 따라 세제혜택의 차이는 없다. 한국의 경우,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세제혜택을 주는 것과 차이가 있다.

중국정부는 현재 세제통합을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며, 국무원과 전인대 등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전인대에서 심의에 들어가고 내년 3월의 전인대에서 개정법률을 통과시키며,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내외자기업의 세제통합이 외상투자기업에 미치는 효과는 지대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외상투자기업이 중국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내자기업에 비하여 여러가지 실제적인 불리한 요소에도 불구하고, 세제에 있어서의 우대혜택(저세율, 2면3감반 및 설비도입관세면제)이 있다는 점이 중국투자의 큰 장점이었는데, 이러한 세제상의 우대혜택을 모두 없애버린다면 외상투자기업이 중국 투자에 느끼는 매력은 그만큼 적어질 수밖에 없다.

세제통합과 관련하여 알려진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세율은 24-26%가 될 것이라고 한다. 세율은 주변국가의 법인세율을 감안하여, 주변국가(한국, 일본등)들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둘째, 기존에 통합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던 외상투자기업에게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둘 것이라고 하며, 유예기간은 대체로 5년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외상투자기업들과 상무부등에서는 유예기간을 10년정도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재정부, 세무당국등에서는 5년보다 짧은 기간을 주장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셋째, 향후 내자기업과 동일하게 일정지역(중서부지역 또는 동북지역)에 대한 우대세율은 남겨둘 예정이라고 한다. 넷째, 회계제도는 현행의 외상투자기업의 회계제도를 기준으로 내외자기업을 통합할 예정이라고 한다.

### 3. 반독점법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에 해당하는 반독점법은 아직 입법되어있지 아니하고, 내년 3월의 전인대에 법안을 통과시킬 목표로 입법절차를 진행중이다. 현재, 반부정당경쟁법(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에 해당함)과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독점심사신고의무<sup>10)</sup>가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9) 이에 따라, BVI소재 기업의 경우에는 회사등록서류를 BVI에서 공증받은 후, 다시 영국 런던으로 보내어 중국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므로(BVI는 작은 섬이므로 중국의 영사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BVI를 관할하는 영국의 중국영사관으로 가야 함),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데 약2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0) 외상투자의 경우 (1) 당사자 일방의 영업액이 15억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2) 1년내에 인수

반독점법의 입법과 관련하여 가장 이슈로 되고 있는 점은 (1) 행정독점에 대한 규제, (2) 독점업무를 담당할 독립된 국가기관의 설치문제의 두가지이다. 중국에서 독점의 문제는 국유기업에 의한 국가의 법률법규등에 근거한 독점이 가장 큰 문제이고, 사영기업이나 외국기업에 의한 독점은 문제로 될만한 분야가 거의 없는 편이다. 물론, 코닥등 몇몇 업체가 중국의 독점금지관련입법이 미비한 것을 기회로 중국내의 많은 기업을 인수합병함으로써 특정업종에서 과반수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한 사례가 없지는 않고, 또한, 이러한 사례로 인하여 외국기업의 중국내 기업인수시에는 일정한 경우 독점심사신고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이번에 국무원의 심의를 거쳐 전인대에 제출된 반독점법 초안에는 내부적인 논란을 거쳐 행정독점에 관한 규제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지고, 독점업무를 담당할 독립된 국가기관설치문제도 부서간의 이견으로 초안에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반독점법이 내자기업의 독점은 눈감고, 외국인투자자들의 중국내 기업인수를 규제하는 용도로만 사용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 우려되고 있다.

#### 4. 노동법

중국정부는 2006년 3월 20일에 <<노동계약법초안>>(의견징구본)을 발표한다. 동 초안은 아직 법률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의견을 수집한 후 일부 보완이 될 수 있을 것이기는 하나, 중국정부의 향후 노동법관련한 입법방향을 파악하는데에는 도움이 된다. 노동계약법초안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습기간에 대하여 종전에는 6개월내의 기간으로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었는데, 초안에서는 (1) 계약기간이 3개월이상시에는 수습

---

합병기업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3) 일방의 시장점유율이 20%이상인 경우, (4) 합병후 시장점유율이 25%이상인 경우, (5) 국내기업, 직능부문, 사업자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등에 독점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역외적용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는데, 제3국에서의 기업결합의 경우에도 (1) 중국내 자산이 30억위안이상인 경우, (2) 중국내의 매출액이 15억위안이상인 경우, (3) 일방의 중국내 시장점유율이 20%이상인 경우, (4) 합병후 시장점유율이 25%이상인 경우, (5) 중국내 관련업종의 직간접지분참여업체가 15개이상인 경우에는 독점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에 위반한 경우의 벌칙에 대하여는 아직 별도의 규정이 없다.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2) 비기술적인 직위는 1개월, 기술적인 직위는 2개월, 고급전문기술직인 경우에는 6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고, (3) 1명의 노동자에게는 1번의 수습기간만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경제보상금에 대하여 종전에는 계약기간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경제보상금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초안에서는 (1) 매6개월당 반달치, 매1년당 6개월치의 급여를 지급한다, 6개월미만은 6개월로, 6개월이상 1년미만은 1년으로 계산한다, (2)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직시에도 경제보상금을 지급한다, (3) 노동계약기간이 만5년이 될 때마다 10%씩 경제보상금을 감액시킨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마지막의 장기근속자에 대하여 경제보상금을 감액시키는 내용은 회사가 장기근속자를 우선적으로 퇴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우려하여 삽입한 내용이다.

셋째, 근로자파견근무와 관련하여, 초안에서는 (1) 근로자파견회사는 자본금이 50만위안이상이고 노동자 1인당 5,000위안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2) 파견기간이 만1년이 되면, 파견회사와 계약을 종료시키고, 사용회사와 노동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사용회사가 파견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을 경우 다른 파견노동자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넷째,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초안은 (1) 6개월이상 전문기술교육을 하는 경우에 의무복무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2) 위반시 위약금을 약정할 수 있는데, 위약금은 미이행복무기간의 비율로 나눈 교육훈련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섯째, 경업금지와 관련하여, 초안은 (1)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에서 경업금지를 약정할 수 있는데, 지역은 실제경쟁 관계에 있는 지역에 한정되어야 하고,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경쟁제한을 규정하는 경우 경쟁제한경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금액은 고용계약종료시의 년급여수입보다 낮아서는 안되고,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경업금지약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3) 근로자의 위약시 위약금액은 경쟁제한경제보상금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여섯째,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초안은 (1) 50명이상의 대량인원해고시, 노동조합 전체직공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협상을 통하여 의견일치를 보아야 한다(종전

의 협의만 요하던 것에서 강화됨), (2) 해고시에는 근속기간이 길고, 장기고정계약을 체결하거나 무기한고용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회사에 남겨야 한다, (3) 6개월내에 신규인원채용시 정리해고인원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 5. 물권법

물권법은 이미 작년에 초안이 완성되어 원래 2006년 3월의 전인대에서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그러나, 북경대학의 공헌전 교수를 비롯한 보수적인 인사들에 의한 반대의견이 제기되면서, 올해 3월의 물권법제정 계획은 무산되었다. 물권법의 제정을 둘러싼 논쟁은 중국에서의 최근의 입법 및 정책과 관련한 상반된 두 가지 의견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물권법의 제정에 반대하는 학자들은 첫째, 물권법초안은 헌법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즉, 헌법은 사회주의공공재산의 신성불가침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데, 물권법은 공유재산보호는 방치하고 사유재산보호의 원칙만을 강조하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사유재산 신성불가침의 원칙을 정하려는 것으로 본다. 둘째, 물권법초안은 사회주의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즉, 사회주의원칙은 생산수단의 공유제인데, 물권법은 오히려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조장하는 것이므로 사회주의원칙에 어긋난다고 보는 것이다. 셋째는 물권법초안에 따르면 국유자산유실을 가져올 것으로 주장한다. 물권법초안이 발효되면 국유기업이 망하게 되고, 저가에 국유기업을 매각하게 됨으로써 대량의 자산유실을 가져오고, 많은 노동자들에게 실직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넷째는 물권법이 시행된다면 빈부격차를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물권법학자, 민법학자들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현재 중국의 빈부양극화, 토지를 보유하지 못한 농민문제등과 어울려 물권법뿐아니라 향후 각종 입법에 있어서도 심한 진통이 예상된다.